체육진흥기금관리 및 운영규정

제정 2021.09.24.

개정 2023.05.19.

개정 2024.11.07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상북도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중의 기금
- 2. 독지가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과 기부금
- 3. 기금의 운영수익금
- 4. 기타 잡수입
- **제3조(기금의 사용)** ① 조성된 기금 및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, 기타 운영수익금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적립함을 원순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<개정 2024.11.07.>
 - 1.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행사 및 대회운영 지원
 - 2. 전문체육, 생활체육, 학교체육 등의 활성화 사업, 체육장학사업 등
 - 3. 체육회 운영비 등
 - ③ 기금은 규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명목으로 대여하거나 일시 전용할 수 없다.
- **제4조(기금의 예탁)**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제1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.
- **제5조(기금의 관리)**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은 체육회 운영위원회에서 운용·관리한다.<개정 2023.05.19.,2024.11.07.>
 - 1. <삭제 2023.05.19.>
 - 2. <삭제 2023.05.19.>
 - 3. <삭제 2023.05.19.>
 - 4. <삭제 2023.05.19.>
 - 5. <삭제 2023.05.19.>

- 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 - 1.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
 - 2. 기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사항
 - 3. 기금증식을 위한 국·공채 매입 등 자산취득에 관하사항
- 제7조(회의의 소집 등)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8조(의사정족수 및 위원회 심의사항의 확정 등) ①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위원회의 의견으로 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표결권을 갖는다. ②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하며, 경미한 사항은 회장의 결재로서 확정된다. 다만,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규정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.
- **제9조(회계관계직의 지정)**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회 사무처장을 기금관리원, 회계업무 담당부장을 분임기금관리원으로 지정한다.
- 제10조(기금운영계획) ① 위원회는 매 회계년도의 기금운영계획 및 변경시에는 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기금의 운영방법 및 규모
 - 2.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
 - 3.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11조(회계검사) 위원장은 기금업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회 감사로 하여금 서류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제12조(장부 등 비치) 기금관리원은 기금의 사용, 출납사항을 기록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비치, 관리하여야 한다.
 - 1. 기금관리대장
 - 2. 예치증서 및 통장
 - 3. 현금출납대장
 - 4. 기타 필요한 서류

제13조(보고)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사항과 집행사항은 차기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14조(준용규정) 기금관리 등 회계관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부 **칙** (2021.09.24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.

부 **칙** (2023.05.1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**칙** (2024.11.0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